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세무1과-13238
등록일자	2015.7.2.
결재일자	2015.7.2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재산1팀장	세무1과장	기획경제국장		
김종현	추승열	신오식	07/02 문경수		
협조자	법인1팀장 재산3팀장 재산2팀장	성기환 위성욱 임경식	법인2팀장	윤미경	



##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(징수유예 등)

### ■ 세제지원내용

- 관련 세목 : 재산세, 취득세 등
- 대상 : 메르스 피해자(확진자 및 가택격리자)
  - \*\*\*\*\*명(2015.6.17.현재)
- 세목 : 재산세, 취득세 등
- 방법 : 피해자 및 관련 병원 신청에 의하여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

### ■ 처리요령

-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(서식 제51호) ⇒ PHIS(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)에서 확진자 및 가택격리자 확인 ⇒ 징수유예 등에 관한 결과 통지(서식 제52호)

### ■ 행정사항

-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문에 『징수유예 등』 문구 기재
- 징수유예 신청자 일일보고(우리구⇒서울시)

강 남 구  
(세 무 1 과)

#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자원장수유에 등

메르스 사태 관련, 메르스 확진자 등이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할 수 없거나,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징수 유예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함.

## I 메르스 피해 현황 및 문제점

### ① 우리구 메르스 피해자 현황( '15. 6.17 현재)

구분1	구분2	인원(명)	자료통보처	비고
합계		*****		
소계		*****		
확진자 및 가택격리자	삼성서울병원	***	보건과	
	질병관리본부	***	보건과	
	재건축총회	***	총무과	
		*****		
휴·폐업 병(의)원		없음	의약과	

### ② 문제점

- 메르스 확진자 및 가택격리자 은행방문 등이 어려워, 7월 납기 재산세 납부가 납기내 어려울 것으로 예상

## II 지방세 관계법상 세제지원 내용

### ① 기한연장

- (요건) 천재지변, 사변, 화재, 도난, 사업상 중대한 위기, 재해,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사망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 
-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연장이

##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- (내용)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등을 연장 조치 가능
  - 6개월(최대 1년까지) 범위 내 연장
- ※ 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 및 「시행령」제5조.제6조 (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)

## 2] 징수유예 등

- (요건) 풍수해.벼락.화재.전쟁.도난.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, **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**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
  - 납세자가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**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**
- (내용) 고지유예, 분할고지,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(최대 1년까지) 범위 내 유예 및 분납 조치
- ※ 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제80조 및 「시행령」제67조(재산세 등 부과고지세목)

## 3]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지방세 감면

- (요건) 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禍), 도괴(倒壞) 또는 **이와 유사한 재해로**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**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** 지방세 일괄 감면조치 시행
- (내용)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,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음
- ※ 근거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제4항 및 「시행령」제2조(전 세목)

### III

## 우리구 지방세 지원 세부 실행기준

### ①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: 즉시시행

- 대상 : 메르스 피해자(확진자 및 가택격리자)
- 세목 : 재산세, 취득세 등
- 방법 : 피해자 및 관련 병원 신청에 의하여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

### ② 지방세 감면 : 메르스 사태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판단

- 메르스 사태 변화에 따라 과거 사례 등 비교하여 감면여부 등을 구의회 의결을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임(사후 소급 감면 가능)

감면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, 사회·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함 - 헌재 2005.2.24, 2003헌바72

※ 세월호사건 때 희생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의회 의결을 통하여 재산세 등 30건, 약 500백만원 감면한 사례 있음.

#### ○ 대상 : \*\*\*\*병원

-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

(단위:백만원)

물건지	구분	소유자	합계	재산세	도시계획	지역자원	지방교육
합 계			2,734	1,386	544	526	277
*****	건물	삼*****	1,019	280	157	526	56
	토지	****	1,714	1,106	387	0	221

### IV

## 행정사항

### ①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문에 『징수유예 등』 문구 기재

-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(서식 제51호) ⇒ PHIS(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)에서 확진자 및 격리자 확인 ⇒ 징수유예 등에 관한 결과 통지(서식 제52호)

### ② 징수유예 신청자 일일보고(우리구 ⇒서울시)

## 관련법률 등

### 지방세기본법

#### 제6조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】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###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

제5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)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·징수(이하 "부과징수"라 한다)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

### 지방세기본법

#### 제26조【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】

① 천재지변, 사변(사변), 화재(화재)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·신청·청구 또는 그밖의 서류의 제출·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·질병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,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·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##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### 제5조【기한의 연장사유 등】

법 제26조 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
2.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(喪中)인 경우
3.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·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
4. 정전, 프로그램의 오류,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
가.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
나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(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 2에서 "지방세수납대행기관"이라 한다)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
다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3조의 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
5.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(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)
6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